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55269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5. 3. 19.

판결 선고2015. 4.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232,399원 및 그 중 137,036,953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77,761,292원에 대하여는 2014. 7. 10.부터 각 2014. 9. 2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1) 별지 제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3. 3. 접수 제6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2)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3. 3. 접수 제84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3)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3. 3. 접수 제84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8.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억 3,600만 원, 보증기한을 2012. 8. 29.1) 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9. 2.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회사가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²⁾과 그 구상금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절차비용 및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잔존하는 주채무에 관한 위약금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3)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2. 2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7,650만 원, 보증기한을 2012. 12. 2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1. 12. 23.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B이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그 구상금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절차비용 및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잔존하는 주채무에 관한 위약금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약정서 제6조 제1항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본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등의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전에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4. 4. 1.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의 개인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관리대상자 등재의 사유로 국민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4. 4. 30.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37,036,953원[= 1억 3,600만 원 + 1,036,953원(= 1억 3,600만 원 × 연 6.05% × 46일/365일5))]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채권의 보전비용으로 2,218,188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60317호 비용 892,518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100415호 비용 824,850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60386호 비용 500,82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784,190원을 회수하였다.

3) 피고 B은 2014. 4. 2. 우리은행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4. 7. 10.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78,236,632원 [7,650만 원 + 1,736,632원(7,650만 원 × 연 6.23% × 133일/365일6))]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그 중 일부인 475,34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라.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가등기 경로

피고 B은 2014. 3. 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3. 3. 접수 제6879호로, 같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3. 3. 접수 제6877호로,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3. 3. 접수 제8477호로,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3. 3. 접수 제8475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경로하여 주었다.

마.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등

우리은행7)은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4. 11. 27.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2. 26. 피고 C에게 164,316,09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나, 피고 C은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904호)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6호증의 1, 2, 3, 17, 갑 제20호증, 을다 제3호증의 9, 을다 제4호증의 4, 을다 제5호증의 3, 을다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232,399원[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구상채권 138,470,951원(= 대위변제금 137,036,953원 + 구상채권의 보전비용 잔액 1,433,998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구상채권 77,761,448원(= 대위변제금 잔액 77,761,292원8) + 확정손해금 156원9)] 및 그 중 137,036,95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4. 30.부터, 77,761,29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7. 10.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4. 9.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별지 제1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3. 3.에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피고 B이 서로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4. 4. 1. 당좌부도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약정 및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상의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4. 4. 30., 2014. 7. 10.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허위채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으로 선행하여 보건대, 을다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1년 4월경부터 2013. 12. 30.까지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 B은 2013. 12. 30. 피고 C에게

"채무자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입·출금을 제외한 총 정산하여 결산한 차용한 금액이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변제기일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차용합니다"는 내용의 차용금액 4억 6,000만 원, 변제기일 2014. 1. 30.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4. 1. 20. 5,000만 원, 2014. 1. 27. 1억 원을 송금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이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도 없이 체결되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 16, 17, 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3. 3.경 피고 B은 다음 표 Ⅰ 기재 각 부동산 합계 2,792,632,36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편, 다음 표 Ⅱ 기재 각 채무 합계 2,733,329,481원 상당의 채무 및 다음 표 Ⅲ 기재 어음금 채무10합계 385,200,000원의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2,460,632,36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5
2	별지 제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272,000,000	갑 제17호증
3	별지 제1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31,000,000	
4	별지 제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29,000,000	
합계	2,792,632,360		

1	우리은행 (양도 후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011. 11. 2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13,500,000
2	우리은행 (양도 후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011. 12. 2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27,287,989
3	원고	이 사건 구상금	216,232,399
4	피고 C	차용금	610,000,000 ¹¹⁾ 원고는 2014. 3. 3.경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6억 1,67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다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3. 10. 피고 B에게 6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670만 원 차용금채무는 2014. 3. 3.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5	E	차용금	252,102,940
6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	42,500,000
7	F	약속어음금	178,000,000 ¹²⁾ 원고는 피고 B의 F에 대한 약속어음금채무가 2억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2014. 3. 3.경 F에 대한 약속어음금채무는 위 1억 7,8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8	국민은행	가압류	25,855,648
9	G, H, I, J, K, L	체불임금	14,880,000
10	M	체불임금	2,300,000
11	N 외 6	체불임금	38,611,985 ¹³⁾ N 외 6인의 2014년 2월경까지의 체불임금채무 합계액이다(갑 제16호증의 10).
12	O	체불임금	4,500,000
13	성남시 수정구	당해세	5,596,960
1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1,961,560
소계	2,733,329,481		

1	바른창호(주)	P	2013. 12. 17.	2014. 4. 20.	10,000,000
2	Q회사 R	S	2013. 12. 23.	2014. 4. 30.	11,000,000
3	T회사 U	V	2014. 1. 2.	2014. 5. 31.	50,000,000
4	바른창호(주)	W	2014. 1. 10.	2014. 5. 31.	10,000,000
5	금강스테인레스(주)	X	2014. 1. 13.	2014. 5. 31.	15,000,000
6	Y회사 Z	AA	2014. 1. 14.	2014. 5. 31.	3,000,000
7	시우종합건설(주)	AB	2014. 1. 14.	2014. 4. 14.	35,000,000
8	Q회사 R	AC	2014. 1. 14.	2014. 5. 31.	30,000,000

1	바른창호(주)	P	2013. 12. 17.	2014. 4. 20.	10,000,000
9	AD회사 AE	AF	2014. 1. 24.	2014. 6. 30.	35,000,000
10	(주)대륙기업	AG	2014. 1. 28.	2014. 6. 30.	8,700,000
11	(주)삼진	AH	2014. 2. 4.	2014. 5. 31.	15,000,000
12	Y회사 Z	AI	2014. 2. 5.	2014. 6. 30.	13,500,000
13	시우종합건설(주)	AJ	2014. 2. 5.	2014. 5. 15.	33,000,000
14	시우종합건설(주)	AK	2014. 2. 20.	2014. 4. 20.	30,000,000
15	H	AL	2014. 2. 7.	2014. 5. 31.	14,000,000
16	Q회사 AM	AN	2014. 2. 10.	2014. 6. 30.	10,000,000
17	시우종합건설(주)	AO	2014. 2. 26.	2014. 5. 24.	33,000,000
18	금강스테인레스(주)	AP	2014. 2. 28.	2014. 6. 30.	14,000,000
19	바른창호(주)	AQ	2014. 2. 28.	2014. 6. 30.	15,000,000
소계	385,2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 B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항변

피고 C은 오랜 친구인 피고 B에게 2011. 1. 10.부터 2013. 12. 30.까지 수시로 돈을 대여하고 일부금액을 변제받았다. 그 후 피고 B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고 C은 2013. 12. 3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그동안 대여한 돈 및 이자를 최종 정산한 4억 6,000만 원을 2014.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피고 B에게 2014. 1. 20. 5,000만 원, 2014. 1. 27.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위 6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리은행의 제1,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6억 8,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이다.

또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받았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 C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려운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융통 목적의 담보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담보를 제공하여 융통한 자금이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담보제공 및 신규자금의 융통이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것이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을다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3호증의 9, 을다 제4호증의 4, 을다 제5호증의 3, 을다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과 피고 B은 오랜 친구인 사실, 피고 C이 피고 B에게 2011년 4월경 이전부터 2013. 12. 30.까지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 B이 2013. 12.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4. 1. 20. 5,000만 원, 2014. 1. 27.

1억 원을 송금해 준 사실,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C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위 (1)항에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위 6억 1,000만 원(4억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선의 인정 여부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은 피고 B의 오랜 친구인 점, 피고 C은 2001. 3. 9.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B와 금전거래를 한 점, 피고 C은 피고 B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피고 B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본 후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점(피고 C의 답변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다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피고 C의 별지 제2 목록 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 부분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제2 목록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라는 의사표시 및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구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 등이 있어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추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들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만약 수익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이 경우 배당금지급채권양도 및 통지라는 형태의 원상회복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¹⁴⁾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별지 제2 목록 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별지 제1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별지 제1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인숙

판사이선말

판사곽용현

별지

1) 이후 보증기한이 2013. 8. 29., 2014. 8. 29.로 순차 변경되었다.

2) 원고는 현재 지연손해금율을 12%로 정하고 있다.

3) 피고 B은 2006. 10. 30.부터 2014. 4. 1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12. 28.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4. 8. 22.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각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0. 23.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8) 78,236,632원 - 475,340원

9) 2014. 7. 10. 상환받은 475,34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475,340원 × 1일/365일 × 연 12%)

10)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표 III의 어음금의 각 지급기일은 2014. 3. 3.경 이후이나 위 각 어음은 2014. 3. 3. 이전에 발행된 어음으로서 피고 B의 당좌거래가 2014. 4. 1.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1) 원고는 2014. 3. 3.경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6억 1,67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다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3. 10. 피고 B에게 6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670만 원 차용금채무는 2014. 3. 3.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12) 원고는 피고 B의 F에 대한 약속어음금채무가 2억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2014. 3. 3.경 F에 대한 약속어음금채무는 위 1억 7,8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3) N 외 6인의 2014년 2월경까지의 체불임금채무 합계액이다(갑 제16호증의 10).

14) 원고가 피고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